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디에스티
○ 대상품목 : **저장·분배서버, 통합플랫폼 운영 서버, 영상분석 서버, 망연계 서버, 보안USB 서버, V3 업데이트 서버, 기타 서버 각 1식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)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 기간은 2027. 1. 1. ~ 12. 31.(1년)으로 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1,500,000원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, 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디에스티 (인)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다은소프트
○ 대상품목 : **패스워드관리시스템 1식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(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)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 기간은 2027. 1. 1. ~ 12. 31.(1년)으로 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**7,600,000원(부가세 포함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, 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다은소프트 (인)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한텍시스템
○ 대상품목 : **웹방화벽 1식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(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)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 기간은 **2027. 1. 1. ~ 12. 31.(1년)**으로 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**2,800,000원(도입가의 7.5%, 낙찰률 85% 적용, 부가세 포함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, 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한텍시스템 (인)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스마트도시협회
○ 대상품목 : **스마트도시 안전망 1식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(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)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 기간은 **2027. 1. 1. ~ 12. 31.(1년)**으로 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**3,100,000원(도입가의 7.5%, 낙찰률 85% 적용, 부가세 포함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, 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스마트도시협회 (인)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아이링크
○ 대상품목 : **백본스위치, L3·L2스위치, COT 1식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(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)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 기간은 **2027. 1. 1. ~ 12. 31.(1년)**으로 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**18,000,000원(부가세 포함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, 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아이링크 (인)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오픈정보기술㈜
○ 대상품목 : **방화벽(F/W), VPN 1식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(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)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 기간은 **2027. 1. 1. ~ 12. 31.(1년)**으로 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**15,200,000원(부가세 포함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, 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오픈정보기술㈜ (인)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프론텍
○ 대상품목 : **스토리지, SAN 스위치 1식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(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)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 기간은 **2027. 1. 1. ~ 12. 31.(1년)**으로 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**101,300,000원 (부가세 포함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, 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프론텍 (인)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네트로
○ 대상품목 : **VMS(저장·분배 및 클라이언트 S/W) 1식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)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 기간은 2027. 1. 1. ~ 12. 31.(1년)으로 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**9,900,000원(부가세 포함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, 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(인)
제조사·공급사명 ㈜네트로 (인)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
○ 발주기관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
○ 제조사·공급사 : 다넷정보기술
○ 대상품목 : 네트워크접근제어(NAC) 1식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년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CCTV 유지보수)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제안요청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④ 기술지원 기간은 2027. 1. 1. ~ 12. 31.(1년)으로 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**4,200,000원(부가세 포함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, 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년 10월 일

발주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다넷정보기술 (인)